

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

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. 3. 30.

예 천 군 의 회 의 장



1. 제정이유

예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과의 현안 사항을 원활히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3조)
 - 매월 1일, 15일 개최, 개최일이 공휴일이거나 사정에 의해 미개최 시 별도 일정 지정 가능
 - 안건이 없거나,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미개최 가능

○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4조)

- 간담회 주제는 의장이 하며, 의장의 부재 시 부의장 주제, 의장·부의장 부재 시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시 연장자 주제

○ 배석 및 발언자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5조)

- 의회사무과장, 전문위원, 의사팀장, 의회사무과 직원이 배석
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배석 가능
- 부군수, 실·과·소장 및 담당관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 가능
-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

○ 심의·의결 안건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6조)

-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
- 정례회(임시회)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
- 의원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안건
- 의회 제출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
- 민원 사항 등 주민여론 사항
-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
-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
-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고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
-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

○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7조)

- 안건은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제출, 다만, 긴급한 경우 그러지 아니함.

○ 보충 설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- 안건에 관하여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보충 설명 가능
-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설명 가능

○ 효력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10조)

-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짐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52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4. 의견제출

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3년 4월 5일(수)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의견제출 및 문의처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의회사무과 (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(전화 054-650-6596, 팩스 054-650-6409)

의견제출서				
자치법규명		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		
의견 제출자	성명/단체명	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	전화번호	
	주 소			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				
찬·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.				

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(이하 “간담회”라 한다)는 예천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개최시기) ① 간담회는 매월 1일, 15일에 개최하되, 개최일이 공휴일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 안건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 등)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,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.

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재 시에는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가 주재한다.

③ 간담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배석 및 발언자) 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, 전문위원, 의사팀장, 의회사무과 직원이 배석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.

② 부군수, 실·과·소장 및 담당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③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다.

제6조(안건) 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
2. 정례회(임시회)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
3. 의원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안건
4. 의회 제출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
5. 민원 사항 등 주민여론 사항
6.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
7.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
8.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고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
9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

제7조(안건 제출) 간담회 안건은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보충 설명) 안건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설명을 대신

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간사) ① 간담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간담회의 결과를 기록·관리한다.

제10조(효력)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.

제11조(준용 규정)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하거나 간담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 고**관계법령****【지방자치법】**

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